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50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허종식·전진숙·남인순

김동아 · 손명수 · 윤준병

안도걸 · 강선우 · 문정복

한정애 · 박희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 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 업 등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 영·인력·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은 수익사업 영위와 이익분배 가능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동일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에도 이익이 법인에 보유되는 비영리법인이란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의료법인 병원은 주로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			
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			
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			
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			
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의료법」 제33조제2항 제3</u>		
	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		
	<u> 령령으로 정하는 자</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